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애인기업 보증제도 운용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근거 마련〉

■ 이견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738호)

2026. 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장애인기업 보증제도 운용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근거 마련	2
※ 참고자료	
1. 장애인기업 보증제도	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견태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12. 30.
3. 회부연월일 : 2025. 12.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장애인기업 대상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기업의 정책금융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증기관이 제도를 형식적으로 마련하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운용하도록 유인·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증기관의 장애인기업 보증제도 운용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인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장애인기업 보증제도 운용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근거 마련

개정안은 정부가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의 수립·운용실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¹⁾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안 제9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자금지원 우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제9조(자금지원 우대)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부는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정부는 제2항의 보증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③ (현행과 같음)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은 제외한다)된 해에는 경영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수 있다. <신 설>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른 보증제도의 수립·운영 실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시 장애인기업²⁾을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신용보증기금³⁾, 기술보증기금⁴⁾ 및 신용보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장애인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나.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고용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4. (생 략)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기업의 정의 등) 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라 함은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장애인이 그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다만, 회사대표가 수인(이하 “공동대표”라 한다)인 경우에는 장애인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하되,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비장애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에 한한다.

2. 장애인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가. 장애인인 조합원의 수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일 것

나. 장애인인 조합원의 출자좌수의 합이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일 것

다.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장애인인 조합원일 것

② 법 제2조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③ 삭제

3)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보증과 회사채등 유통화를 수행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기술보증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보증제도를 정착·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

증재단⁵⁾이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하도록 할 수 있는바, 현재 각 보증기관에서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우대·특별 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참고자료 1).

한편, 「2023년 기준 장애인기업 실태조사」⁶⁾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기업(174,344개사) 중 45.7%(79,652개사)가 ‘자금조달’을 기업체 경영 시 애로사항⁷⁾으로 꼽았으며(복수응답 가능), 2023년 기준 전체 장애인기업의 자금사정은 5점 만점 기준 2.20점으로 ‘약간 나쁨’ 수준을 나타냄.⁸⁾

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기업활동 지원정책 중 가장 많이 이용된 제도는 ‘금융지원 제도’(19.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⁹⁾ 향후 장애인기업 활동에 필요한 지원정책에 대해서도 ‘금융지원 제도’(63.9%)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바,¹⁰⁾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 촉진 및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자립 지원이라는 이 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6) 중소벤처기업부·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2023년 기준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2025.3.

7) 세부적으로는 ‘고금리’(67.0%)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출한도 부족’(33.8%), ‘낮은 신용도’(16.7%), ‘담보 부족’(15.2%) 등의 순으로 나타남.

8) ‘매우 나쁨’(22.7%)–‘약간 나쁨’(36.7%)–‘보통’(38.3%)–‘약간 좋음’(2.2%)–‘매우 좋음’(0.1%)

9) 그다음으로 ‘세제지원 제도’(13.7%), ‘판로지원 제도’(4.8%), ‘인력지원 제도’(4.1%) 등의 순임.

10) 그다음으로 ‘세제지원 제도’(54.8%), ‘판로지원 제도’(37.7%), ‘인력지원 제도’(17.0%) 등의 순임.

장애인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을 확대하고 자금사정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개정안의 취지는 정부가 장애인기업에 대한 보증제도의 수립·운
용 실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재단이
장애인기업에 대한 보증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도록 유인¹¹⁾하
고, 공적 보증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공공기관 등의 법적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영실적 평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입
법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¹²⁾, 「장
아인복지법」¹³⁾, 「청년고용촉진 특별법」¹⁴⁾ 등이 있음.

11)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7항),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준정
부기관에 대하여 기관장·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
(동법 제48조제8항), 평가 결과 인건비 과다편성 및 경영지침 위반으로 경영부실을 초래한 공
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는 향후 경영책임성 확보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사상 또
는 예산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동법 제48조제9항).

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 등) ① ~ ⑦ (생략)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및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상생협력을 통하
여 생산한 것으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실적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13)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①·② (생략)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개정안 심사 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우선, 유사 취지 입법례에서 경영실적 평가 반영을 통해 이행을 확보하려는 법적 의무(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 실시, 청년 미취업자 고용 등)의 경우 그 의무이행의 적용 대상이 전체 공공기관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데 비해,

개정안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되는 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에 대한 보증제도 수립·운용은 신용보증기금 등 일부 보증기관만 수행하고 있는 업무로서 적용대상의 범위가 다르고, 법적 의무라기보다 정부 시책에 가까워 보이는 등 차이점이 있음.

그러므로 개정안과 같이 일부 보증기관이 수행하는 장애인기업 보증제도 수립·운용실적을 공공기관 일반에 적용되는 경영실적 평가의 지표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평가 대상기관 간 형평성 및 평가의 공정성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 1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 ④ (생략)
- 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따른 경영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경영실적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을 고려하여 ‘편람’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⁵⁾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개별 법률에서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행법 체계와의 정합성 및 평가 기준의 통일성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해 보이며, 그 밖에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재정경제부)을 통해 장애인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도 평가 기준 설정의 효율성이나 탄력성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행법 제9조의2에 따른 ‘장애인기업제품 우선 구매’ 제도¹⁶⁾의 경우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실적을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15)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경영실적 평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기관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기준과 방법 및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에 따라 새로이 지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지정된 후 4개월 이내에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법 제4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상법」, 「형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해당 공공기관의 설립 근거 법률 또는 그 밖에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되는 법률 등을 위반하여 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에 대한 건의 및 요구, 성과급 지급률 결정 등의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

16)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용역 및 공사(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반영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령상 규정은 없으나,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근거하여 평가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보증제도는 특정 보증기관에 한정된 제도로서 전체 공공기관에 공통 적용이 곤란하므로, 장애인기업 보증제도 운용실적을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재정경제부는 현행법 체계상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외에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임. 세부적으로, 현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경영실적 평가의 기본원칙만 규정할 뿐,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방법은 하위법령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편람에 규정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다른 법률에서 구체적인 평가 내용을 직접 규율할 경우 정책환경 변화 등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곤란하고 다른 평가 지표와의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65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중소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의 이행점검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실적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중소기업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구매실적을 확인한 결과 구매실적이 제3항에 따른 구매목표에 현저히 미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참고자료】

1	장애인기업 대상 보증제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	-------------

구분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상품	장애인기업 우대보증	일반보증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일반보증
주요대상	기술력·혁신성을 보유한 장애인기업	기술력·혁신성을 보유한 중소기업	사업자등록한 후 영업(가동) 중인 장애인기업 (단, 같은 기업당 재단 보증금액 50백만원 초과 시 업력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한 후 영업(가동) 중인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소상공인 우선 취급) * 보증별 별도 조건에 따라 대상 상이
보증한도	보증한도 이내 (추정매출액 및 기술평가등급 등에 기반하여 산정)	기업당 30억원	같은 기업 당 보증금액 1억원 이내	보증별 상이
보증비율	85% ~ 최대 95%	85%	2천만원 이하 : 100% 2천만원 초과 : 90%	기본 85%
보증료율	(장애인기업) 0.3%p 감면	0.5% ~ 최대 3.0%	0.7% 이내	1.0% 이내 (기업의 신용도를 감안하여 0.5%~2.0% 차등 적용)
운용실적 (‘25년 신규공급 기준)	212억원	(전체) 6조 4,006억원	320억원	(전체) 14조 5,620억원

*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장애인기업 대상으로 보증료율 우대(0.2%p 감면) 운용 중